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66
----------	-----------

제안연월일 : 2023년 9월 12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수정이유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감이나 학교장,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보호자와 같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조례가 실질적 근거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의 출입제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라 발생한 법률적 분쟁의 당사자가 된 교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에 학교 교육환경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제4호 신설)
- 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 교육감에게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 청취 의무를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과 보호자, 학생의 책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시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4조)

다.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건을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변경하고, 보호자가 학생의 출결 상태 등을 교원에게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에 있어 교육감이 각 학교에 적절한 통신환경을 조성하도록 수정함(안 제13조)

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출입제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법률적인 분쟁에 당사자가 된 교원에 대한 소송비 지원, 교원의 심리적 피해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 신설)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학교장은”을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교직원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학생과 보호자는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학교장”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출입 제한 등의 조치)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그 밖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행위, 시설물 점거, 소란행위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교직원과 학생보호인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5에 따른 자를 말한다.) 등의 지시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응한 경우
  3. 총포도검류나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하거나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출입증 발급 및 패용, 출입 목적 및 신원 확인 요청 등 학칙에 따라 정해진 출입 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의 구체적인 요건과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범위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인 교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④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피해의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학교”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8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자”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제8조제4항 및 제8조제5항”을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5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해당 학교의 장”을 “학교장”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0조) 제1항 제3호마목, 같은 조(중전의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을 각각 “학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학부모”를 “보호자”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4조)의 제목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를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기된 보호자의 민원이 모욕, 명예훼손 등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필요할”을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판단될 때 학교장은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신수단을 지급”을 “통신환경을 조성”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p>4. (생략)</p> <p>제3조(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p>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생략)</p> <p><u>&lt;신설&gt;</u></p> <p>② 학교의 <u>장은</u>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p>	<p>제2조(정의) ----- -----.</p> <p>1. ~ 3. (원안과 같음)</p> <p>4. <u>“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u></p> <p>5. (원안 제4호와 같음)</p> <p>제3조(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 ----- -----.</p> <p>1. ~ 3. (원안과 같음)</p> <p>4. <u>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u></p> <p>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원안과 같음)</p> <p>② <u>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③ ----- <u>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u> ----- -----</p>

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6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

-----  
-----  
-----  
-----.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생과 보호자는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장-----

-----  
-----  
-----  
-----.

<삭 제>

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밀을 유지하여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 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

치) ① ~ ⑥ (생략)

⑦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 운영) ① -----

-----

----- 학교-----

-----

-----.

-----

-----

-----.

1. ~ 4.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제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

치) ① ~ ⑥ (원안과 같음)

⑦ -----

-----

-----

-----

----- 보호자-----

-----

-----

-----.

-----

-----



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2. (생략)

제9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학교장은 제8조 제4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제8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라. (생략)

-----  
-----  
-----  
-----.

1. 2. (원안과 같음)

제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5항-----  
-----  
-----.

② ----- 제7조제5항-----  
-----  
학교장-----  
-----.

제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  
-----  
-----  
-----.

1. 2. (원안과 같음)

3. -----  
-----  
가. ~ 라. (원안과 같음)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1조 ~ 제13조 (생략)

제14조(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① (생략)

② 제기된 보호자의 민원이 모욕, 명예훼손 등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마. ----- 학교장-----  
-----  
-----

② 학교장-----  
-----  
-----.

③ 학교장-----  
-----  
-----  
----- 보  
호자-----  
-----.

④ (원안과 같음)

제10조 ~ 제12조 (원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3조(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판단될 때 학교장은 필요한 -----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적절한 통신투입단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 통  
----- 통  
신환경을 조성-----.

제14조(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출입

제한 등의 조치)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그 밖에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행위, 시설물 점거, 소란행위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교직원과 학생보호인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등의 지시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응한 경우
3. 총포도검류나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출입증 발급 및 패용, 출입목적 및 신원 확인 요청 등 학칙에 따라 정해진 출입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의 구체

적인 요건과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범위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인 교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피해의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을 예우하며 상호 간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원에 대한 예우”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생과 보호자는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초기 대응(이하 “초기대응”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초기대응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리 지정된 업무 담당자가 인지 즉시 현장 개입
2.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3. 목격학생과 현장 안정화
4. 피해교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5. 관련자가 학생일 경우, 보호자에 연락
6. 그 밖에 교육감이 초기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④ 제2항에 따라 초기대응을 한 학교장은 지체 없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사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사항이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제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학교장은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제7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학교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라.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라.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① 교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등) ①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판단될 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질병, 사고, 가족 장례 등으로 학교 출석이 어렵거나 늦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적절한 통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출입 제한 등의 조치)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그 밖에 방호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행위, 시설물 점거, 소란행위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교직원과 학생보호인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등의 지시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응한 경우
  3. 총포도검류나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하거나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출입증 발급 및 패용, 출입 목적 및 신원 확인 요청 등 학칙에 따라 정해진 출입 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의 구체적인 요건과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범위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인 교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④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피해의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업무의 경감)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교육활동보호) 교육감은 학교에서 교원과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 등에 대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